

의안번호	2208409
의 퇴 인	이달희의원
회 답 일	2025.4.1.
추계번호	25D10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8조제6항 (사전투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의 사전투표함(이하 ‘관외 사전투표함’)을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기 위하여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2명을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우체국장은 인계받은 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되는 모든 과정에 경찰공무원 2명이 동행하도록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58조제6항 (사전투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관외 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2명 동행(안 제158조제6항)

- 개정안은 관외 사전투표함의 우체국 인계, 우체국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되는 모든 과정에 경찰공무원 2명을 동행하도록 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사전투표함의 경우 현행법 제170조를 준용한다는 규정¹⁾에 근거하여 경찰공무원 2명이 이미 동행하고 있으며 여비로 2만원을 지급함

- 개정안에서 규정한 관외 사전투표함의 우체국 인계는 관내 사전투표함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인계와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현행법에 따라 동행하는 경찰공무원 2명이 수행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개정안에서 규정한 관외 사전투표함의 우체국 인계 후에 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되는 모든 과정에 경찰공무원 2명을 동행하는 경우, 송부 경로와 송부 기간에 따라 해당 과정에 동행한 경찰공무원 2명에게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다만, 관외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등기우편물이 최초 인계된 우체국, 해당 우체국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까지 송부되는 경로와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 참고로, 가장 최근의 공직선거인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자 수가 총 13,849,043명이었고 관외 사전투표자 수는 3,211,599명으로 23.2%를 차지함

1) 제158조(사전투표)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생략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